

제2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 장 소: - (서면심의)				심의요청부서	OOOO과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73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7116377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20.) * 청구내용 : 청구인이 신고한 부패신고사건 관련 종결결재문서, 신고심사의견서, 피신고기관 제출 자료, 판단 근거자료 등 * 부서 결정사항 : 부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종결결재문서 공개, 판단 근거자료 및 검토자료 부존재, 신고심사의견서 및 피신고기관 제출 자료 비공개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부분공개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의사결정 내지 내부 검토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 의견청취 결과의 기속력을 오인함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의견내용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신고심사의견서 및 피신고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의견 및 협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진술·증언내용 및 제공한 자료등을 통해							

	협조자가 누구인지 유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해당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과 관련이 있기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민사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 또한 대법원 2014두43356 판결에 따르면 ‘의사 결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이 공개될 경우 향후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및 위원회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켜 부패신고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결정사항	○ 기각